

서울특별시 강남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심사보고서

의안 번호	599
----------	-----

2025. 10. 14.
경제도시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5. 9. 30. 강남구청장(기획예산과)

나. 상정의결

- 제330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경제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(2025. 10. 14.)
“ 수정가결 ”

2. 제안이유(제안설명 : 기획경제국장 심혁보)

- 서울특별시 강남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2025. 12. 31.자로 존속기한이 만료 예정됨에 따라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4조에 의거 5년 후인 2030. 12. 31.까지로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고,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 관련 조문 정비 등을 시행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강남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 조문 체계 등 정비(안 제9조 ~제12조의3)
- 나.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존속기한 연장 (안 제14조)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없음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 :

(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(2) 입법예고(2025. 8. 22. ~ 2025. 9. 12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(3) 규제심사 :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

(4) 부패영향평가 : 특기할 사항 없음

(5) 성별영향분석평가 : 특기할 사항 없음

5. 검토의견(전문위원 : 이주현)

가. 개정 취지 및 배경

○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

- 서울특별시 강남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 조정과 재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각종 회계·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려는 목적으로 2021년부터 설치·운용됨.

○ 기금의 활용

- 2024회계연도부터 결산상 발생한 순세계잉여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는 방식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한 결산정리를 시행함으로써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개선하였음.

○ 기금의 존속기한에 대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 결과

-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기금을 기존의 존속기한이 경과된 후에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

할 수 있음. 이에 대해 강남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는 강남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. 12. 31.까지 연장될 필요가 있다고 심의함.¹⁾

<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 결과>

- 심의안건: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존속기한 연장
- 심의방법: 서면심의
- 심의일시: 2025. 9. 16. (화)
- 심의결과: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. 12. 31.로 한다.

나. 검토 내용

○ 조문 체계 정비

- 안 제1조는 이 조례의 목적이 서울특별시 강남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있다는 것임.
- 안 제2조제2호·제5조제1항은 약칭 표기를 위하여 정비한 것임.
- 안 제5조제2항·제6조제2항제2호·제7조는 대부분 조문의 명확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정비한 것임.
- 안 제9조부터 제12조의3까지는 강남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, 구성, 운영 등을 체계적으로 정비한 것임.
- 안 제12조의3은 심의방식에 따른 수당지급 기준을 명시하기 위하여 정비한 것임.
- 안 제13조·제15조는 조 번호를 바꾸는 것임.
- 안 제14조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목적으로 개정하려는 것임.

다. 종합 의견

○ 기금 설치 목적 및 운용 현황

- 강남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전반적으로 설치 목적에 부합하도록

1)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[시행 2023. 7. 10.] [법률 제19430호]

제4조(기금의 존속기한) ③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. 이 경우 「지방재정법」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
잘 운영되고 있지만, 최근 일반회계로의 전출금 규모가 상당히 크다고 보임. 이를 기금운용계획 검토 시 확인하지만, 기금의 결산보고 때에도 해당 사유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.

○ 조문 체계 정비

- 개정대상이 되는 조문 중 전반부는 대부분 조문 체계를 명확히 할 목적으로 정비할 필요성이 인정되나, 후반부는 일부개정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연이어 존재하는 조문이 개정대상 이므로 굳이 가지조항으로 개정처리를 할 실익이 극히 적다고 보임.
- 이 경우 순서대로 연번을 붙여서 개정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 됨. 향후 규정 정비 시 기금의 존속기한 규정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 규정보다 앞에 위치하는 것이 조문 체계상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.

○ 향후 과제: 기금정비계획 작성 및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여부 확인

-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정비계획에 기금의 존속기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고, 해당 내용을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반영해야 함.

※ 관계 법령

지방자치법 [시행 2025. 10. 2.] [법률 제20870호, 일부개정 2025. 4. 1.]

제47조(지방의회의 의결사항) ① 지방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.

5. 기금의 설치·운용

제159조(재산과 기금의 설치)

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(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한다)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, 기금의 설치·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

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[시행 2023. 7. 10.] [법률 제19430호]

제4조(기금의 존속기한)

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. (이하 생략)

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,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.

③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. 이 경우 「지방재정법」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
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의 존속기한 및 통합·폐지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5년 단위의 기금정비계획을 매년 작성하여 이를 「지방재정법」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.

제16조(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·운용)

① 지방자치단체는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 등의 조정 및 재정의 안정적 운용 또는 각종 회계·기금 운용 상 여유자원 또는 예치금의 통합적 관리를 위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(이하 “통합기금”이라 한다)을 설치할 수 있다. 통합기금은 통합 계정과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용하여야 한다.

② 통합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

1. 「지방재정법」 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는 자금(이하 이 조에서 “예수금”이라 한다)
2.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
3. 통합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

③ 통합 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의 예탁
2.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
3. 통합기금의 운용·관리에 필요한 경비

- ④ 재정안정화 계정은 세입 및 결산상 잉여금 등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을 재원으로 한다. 다만,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은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.
- ⑤ 재정안정화 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 - 1. 다른 회계로의 전출
 - 2. 지방채 원리금 상환
- ⑥ 지방자치단체가 한 회계연도에 재정안정화 계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 말 기준 재정안정화 계정 적립금 총액 중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. 다만,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-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합기금의 조성, 용도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

6. 질의 및 답변 요지 : “생략”

7. 토론 요지 : “생략”

8. 심사 결과 : “수정가결”

9. 소수의견의 요지 : “없음”

10. 기타 사항 : “없음”

붙임 1. 서울특별시 강남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
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2. 서울특별시 강남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
일부개정조례안